

KAIST 기술가치창출원

연구교원(산학협력중점 교수 포함) 모집 공고

1 모집개요,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

□ 모집 개요

- (모집분야) 지식재산, 기술이전, 산학협력
- (직 종) 연구교원(산학협력중점 교수 포함)
- (모집인원) 1명
- (직 무)

연구교원은 아래 담당 실무를 수행합니다.

- (TLO 업무 수행) 특허 및 기술이전 전략 수립, 우수기술 발굴, 기술성 평가, 성장투자 및 지원 마케팅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
- (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) ILP 프로그램 기획, 마케팅 및 운영, 교내외 산학협력 연구 및 기술사업화 연구비 사업 성과 창출, 학내 유관 사업과의 연계 및 지원 등

□ 지원 자격

구 분	주요 내용
공통 응시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및 이에 준하는 자 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2025년 4~6월 중 KAIST(대전, 문지캠퍼스) 근무 가능한 자
직무 관련 응시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박사학위 취득자
우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(서류 심사 가점 각 5점 / 최대 5점까지만 인정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: 해당 법률에 따라 가산점 부여(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)

□ 결격 사유

구 분	주요 내용
결격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-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- 「병역법」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-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의해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-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또는 면직된 자로서 처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 대상자 - 2019.9.1. 이후 KAIST와 최초로 별정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·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(단, 체류자격이 영주(F-5)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) ·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를 임용하는 경우 · 연수연구원을 임용하는 경우 · 연수연구원 또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한 지를 위촉연구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서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

2 근무조건 및 근무지

구 분	주요 내용
고용형태	- 계약직(연구교원)
근무형태	- 전일제(주5일, 09:00~18:00)
계약기간	- 임용일로부터 2년 (기술가치창출원 인사위원회에서 실적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임용 가능)
급 여	- 5,000,000원/월 (세전기준, 경력에 따라 조율 예정)
근 무 지	- KAIST 문지캠퍼스(대전)
근무부서	- KAIST 기술가치창출원
임용예정일	- 2025년 4~6월 中

3 지원방법 및 채용절차

□ 지원 방법 및 기간

구 분	주요 내용
지원 방법	- 지정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: haeji@kaist.ac.kr * 이메일 제목: [KAIST 기술가치창출원] 연구교원 응시 지원_000(성명)
지원 기간	- 2025년 1월 1일(수)부터 2025년 1월 31일(금) 10:00까지 도착 (수신)분에 한함 * 마감일 10:00까지 원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만 인정하며, 최종제출 후 수정 불가

□ 채용 절차

전형 구분	세부 내용	일 정	합격배수 (예비합격배수)
서류 전형	- 직무수행 관련된 자격 요건 심사	2025년 2월 초순 (예정)	2배수 내 (1배수)
인터뷰 전형	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진행	2025년 2월 중순 (예정)	1배수 (1배수)
최종 심의	- 최종 심의를 통한 합격자 결정	2025년 2월 하순 (예정)	
최종합격자 통보 및 결격사유 검증	- 최종 합격자 통보 - 임용서류 작성 및 제출 등 - 결격사유 확인	2025년 3월 中 (예정)	
임 용	- 신규임용	2025년 4~6월 中	

※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일정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발생 시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

※ 전형 방법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.

※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도 있으며, **적격자 부재 시 선발 인원이 없을 수 있음.**

※ 지원서 및 부속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되었을 때는 지원을 무효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.

4 전형 단계별 평가항목 및 합격자 처리기준

□ 전형 단계별 평가항목

전형 구분	평가 항목
서류 전형	- 경력 및 자질 - 직무(기술이전, 지식재산권, 산학협력 등) 관련 실적 - 담당 업무 계획서
인터뷰 전형	- 교원으로서의 자질 - 경력 및 실적 우수성 - 업무추진계획의 우수성

□ 합격자 처리기준

구 분	처리기준
법정 가점 사항	취업지원대상자에게 관련 법에 맞도록 적용*
합격자 처리기준	평가위원 평균점수 기준 고득점 순 (※ 각 전형별 만점의 1/2 미만을 득점하는 경우 불합격)
동점자 처리기준	(서류전형)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(인터뷰전형) 관련 규정에 따라 ①취업지원대상자 ②특기자 ③지역인재 ④장애인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.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②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(가점에 따른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 전형단계별 제출서류

□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시기	제출방법
- 임용지원서(소정 양식) 1부 (CV는 별도 양식이 없으나, 자유 양식으로 반드시 첨부 요망) ※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 유발 요소 작성 금지 ※ 단,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관련 경력/실적 사항이 있으면 임용지원서에 해당 내용 기재	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	온라인 접수처로 제출 (haeji@kasit.ac.kr) ※ 이메일 외의 방식을 통한 서류 접수는 불가함.

※ 블라인드 채용 안내
※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편견유발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? - 편견 유발 요소: 성별, 생년월일(연령)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신체적 조건(키, 체중, 용모(사진 포함)), 재산, 혼인여부 등 * 채용 전형 시 블라인드 공정 채용 제도에 따른 편견 유발 요소를 착오 또는 고의로 평가위원에게 노출할 경우 감점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. * 특히, 응시지원서 본문 외에 CV 등에도 편견유발 요소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

□ 최종합격 후 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시기	제출방법
- 응시원서 상 관련 증빙자료 일체 - 기본증명서 /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) - 임용 절차 필요 서류	합격자 통보 후	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
6 결격사유 검증

□ 주요사항

- (제출대상자) 인터뷰전형 합격자(채용후보자)
- (제출방법)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

- (확인내용)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내용에 대한 진위 확인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

□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기재사항 진위확인

제출서류	비고
- 지원자격,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험·경력사항, 연구 관련 증빙서류 일체	- 발급기관 서식 - 경력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로 경력증명서,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등 제출
- 자기소개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	- 채용담당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 제출 요청
-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(장애인증명서,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)	- 제출처를 KAIST로 발급받아 제출
- 기타 진위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	

□ 임용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

제출서류	비고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- 개인신용정보조회서 - 결격사유 미해당 확인서 - 병적증명서(해당자) - 성범죄경력조회서	- 발급기관 서식 (단, KAIST 양식이 있는 경우 제외)

- 증빙자료는 합격 결정과 관련되어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자료로 진위확인을 위해서만 활용
-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자료만 인정하며, 컴퓨터 캡처화면 등 비공식적인 자료는 인정하지 않음.
- 진위확인이 가능하도록 **30일 이내에 발급받은**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함.
-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.

7 기타 사항 및 문의처

- 방문, 우편, Fax로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음
- 문의: KAIST 기술가치창출원 채용 담당자(042-350-2172 / haeji@kaist.ac.kr)

8 이의신청 및 서류반환신청

□ 이의신청

구 분	주요내용
운영목적	-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
신청기간	-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
신청방법	- 채용담당자에게 별도로 신청 - 응시자는 이의제기 신청양식을 기재해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 (신청양식은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송부)
처리대상	-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 등), 지적재산권(외부 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(※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.)

□ 채용서류 반환신청

구 분	주요내용
청구기간	-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
신청방법	- 이메일 제출
반환대상	- 채용서류(기초심사자료, 입증자료, 심층심사자료 등)
반환제외대상	-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 - 지원자가 KAIST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

9 유의사항

□ KAIST 별정직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 유의사항

- KAIST 기간제근로자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, **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응시원서 상 경력사항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** 하며,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취소 또는 채용취소를 할 수 있음.
- KAIST에 기간제근로자로 재직 중인 경우, 관련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이 불가함. (단, 결격사유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도 채용 가능)

□ 지원서 작성에 관한 사항
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, 누락, 지원자격 미충족 및 연락불능, 합격자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.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할 경우,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.
 - 기관 명칭 오기,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, 비속어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
- **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, 해당자의 전형을 중단하고 불합격 처리,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.**
 - 응시원서 작성 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
 - **(미제출 시)**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
 - * 여러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
 - **(기재오류)**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증빙서류 내용이 다른 경우, 내부절차를 거쳐 오류의 경중을 판단하여 불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.

□ 부정행위 관련 사항

- 채용 관련 부정행위 처벌사항

한국과학기술원 전형요령 제24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관련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응시자격을 박탈하거나 합격취소, 채용취소 또는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채용취소자의 경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함.

1. 타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2. 구비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자
3. 소정 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는 등 응시자격 부적격자
4. 부정한 방법에 의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부정행위자
5. 청탁·압력·뇌물 등을 통한 채용비리 당사자 또는 연루자
6. 부정합격자*

*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,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

○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자의 경우 합격취소·채용취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
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*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
* 공직유관단체 포함

□ 기타사항

○ 전형일정 및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지원자들에게 개별 통보함.

○ 채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해야함.

※ 단,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, 입사포기의사를 밝히고 입사포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포기서류의 제출 없이도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.

○ 채용확정자(면접전형 합격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)의 채용취소, 임용불응,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채용예비후보자(면접전형 예비합격 차순위자)를 선정할 수 있으며, 기관 필요 시 최대 1년 이내에 채용을 할 수 있음.

○ 신규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친인척* 재직여부를 확인하며, 파악된 인원수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.

※ 배우자,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·외가 4촌 이내

○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연락처: KAIST 채용노무팀(recruit@kaist.ac.kr)